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년 11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제1조)
 - 가) 【별표】의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함
 - 건축신고의 수리 【별표 제3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별표 제4호】
 -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별표 제5호】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별표 제6호】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별표 제15호】
 -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중 “가목”, “다목” 【별표 제17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자경증명 발급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 【별표 제19호】
-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조)
 - 제13조제2항 신설
 -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의 개정(안 제3조)
 -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구세의 부과 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등의 위임조문에서 “동장” 삭제
-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4조)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 청소년 지도위원의 권한중 “동장”의 지도위원 위촉권한을 제외하고, 단서조항 삭제
-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안 제5조)
 -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 제2항6호중 기타 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등을 “관할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 제18조, 제19조, 제21조중 “동사무소 및 동장”을 삭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안 제6조)

제16조(중전의 토지등의 소유권)

-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장 소관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우리구 사무위임조례 “건축신고의 수리” 등 7개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삭제하고, (안)제2조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 제2항에 동장이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우리구 구세조례 제6조에 동장에게 위임한 구세징수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개정하며, (안)제4조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 제2조의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시 동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2항 동장에게 위임한 폐기물 관련 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개정하고, (안)제6조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6조의 동장에게 위임한 “무허가건물 확인원”발급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함에 있어 불가피한 우리구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장의 존치업무중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업무 전담인력과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보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어 기존에 동장이 수행하던 일부 사무가 구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이관되는 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제1조)

1. 【별표】의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함

- 건축신고의 수리 【별표 제3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별표 제4호】
-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별표 제5호】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별표 제6호】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별표 제15호】
-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중 “가목”, “다목” 【별표 제17호】
 - 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
 - 다. 농지 자경 증명발급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 【별표 제19호】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 제2조)

제13조제2항 신설

-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의 개정(안 제3조)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구세의 부과 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등의 위임조문에서 “동장” 삭제

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4조)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 청소년 지도위원의 권한중 “동장”의 지도위원 위촉권한을 제외하고, 단서조항 삭제

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안 제5조)

제8조(생활폐기물보관 및 배출방법)

- 제2항6호중 기타 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등을 “관할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 제18조, 제19조, 제21조중 “동사무소 및 동장”을 삭제

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안 제6조)

제16조(중전의 토지등의 소유권)

-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개정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중 “3. 건축신고의 수리,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5.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6.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중 가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다목 농지자경증명발급, 19.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의 사무명란과 동 호의 근거법령란, 수입기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또는 동장”을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장”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중 “관활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동사무소 및”과 “동장 및”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동장 및”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및 동장”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및 동장”과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관활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제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현행			개정 (안)		
【별표】			【별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건축신고의 수리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나. 대수선 다. 원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인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제9조, 동법시행령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3. 삭제	삭제	삭제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5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제13조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4. 삭제	삭제	삭제
5.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제72조, 동법시행령제118조, 도시계획법제4조제1항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5. 삭제	삭제	삭제
6.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건축법제27조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6. 삭제	삭제	삭제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나.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등록증교부 라.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폐업신고 마.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등록취소 등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7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9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0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1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2조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15. 삭제	삭제	삭제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다. 농지자경증명발급	농지법제8조 동법시행령제10조제2항 농지법제5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54조 농지법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54조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가. 삭제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동장(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	19. 삭제	삭제	삭제

제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현행	개정 (안)
제13조(직무) ① 생략 ② 신설	제1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현행	개정 (안)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삭제)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조례

현행	개정 (안)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삭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삭제)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현행	개정 (안)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략) ②(생략) 1. ~ 5. (생략) 6. 기타 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u>관할동장</u>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u>관할동장</u>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생략) ②(생략)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u>동사무소</u> 및(삭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u>동장</u> 및(삭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u>동장</u> 및(삭제)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u>동장</u>(삭제)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생략) ②<u>구청장</u> 및 <u>동장</u>(삭제)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u>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u> (삭제)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략) ②(생략) 1. ~ 5. (생략) 6. 기타 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u>구청장</u>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u>구청장</u>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현행	개정 (안)
제16조(중전의 토지 등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중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u>관할동장</u>(단,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한다.	제16조(중전의 토지 등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중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u>구청장</u>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한다.